

공  
고

기안용지 35

분류기호 문서번호	보이 1436	(전화번호 430)	신길관 국장
제리기호		보건사외국장	
시행연차			
과기연			
보	보건2과장	1973.2.20	
가			
나	식품위생국장	1973.2.20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해			
제			
안			

식품위생국장 김홍범 1973.2.20  
보건2과장 조안

회계과장  
법무과장(공공보안) [인]  
시민과장 [인]  
외국식사과장 [인]  
문서관리과장 [인]  
학예과장 [인]

1973.2.20

71년도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제 1 안 ( 내부결재 )

1. 당시 시행 71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을 조리사에 관한 구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기획서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하며,
  2. 이에 소요되는 예산(세입, 세출) 집행은 공고로 응시자 총수에 따라 산출하며, 공고료는 공고즉시 청구에 의하여 지불코저 합니다.
- 첨부 : 71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실시 기획서

제 2 안

수신 서울 보건학교 (홍목로 3가 소재)

제목 동 권

1. 당시 시행 71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0201-1-8A

1969 11. 10. 승인

190mm X 268mm 백상 509/m<sup>2</sup>

(서울특별시립 삼성 직업보도원 인쇄)

공여·공여로거 여론아 하오를 안과 및 싹기 는 시험의 시험 장으로 · 사용공거  
아모니 업고 하여 주시게 바랍니카.

첨부 : 공2문 1부

### 제 3안

추진 추진처 안도

장르 : 보건과장 (위생과장)

제목 : 서울특별시 시험기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1. 당차 시험기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을 범점 공2문 과 같이  
삼사아오니 때 관아에 남미 암미 다수 응치모록 조져아미 주시게 바랍니카

첨부 : 공2문 1부

추진처 : 1. 보건사회부장관

2. 다2-11

3. 덕안 모식업 업회 중앙회장및 본회장

4. 동파 모식업 용회장및 지부장

5. 영계육 중앙2동 기술 학교장

6. 서울 2동 기술 학교장

### 제 4안

추진 추진처 참모

장르 : 위생과장

제목 : 동 건

1. 당차 기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을 범 점 공2문과 같이 실시  
아니 관제 거관에 남미 주지시며 다수 응치모록 암것이며, 양후 조 비사를  
무어아암 업소 때서 조 비사도 없이 동 시험에도 응치아지않는 사미가 없도록  
담당자는 전국 노면암것.

첨부 : 공2문 1부

수신자 서사 23 - 31

제 5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보건 2과장

제목 물건

1. 당시 시행 7년도 제 1회 로마사 자격 시험을 필전 공로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과보도~~ ~~넘지~~ ~~않고~~ 동 시험에 다수 응시하도록 ~~촉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 ~~공용~~ ~~통~~ ~~일~~ ~~서~~ ~~함~~ ~~은~~

1. 시험위원회의 구성

가. 명칭

서울특별시 조미사 자격시험 위원회라 한다

나. 임원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간사 1인
- 4) 학과시험위원 과목별 2인
- 5) 실기시험위원 분야별 2인
- 6) 서기 약간명
- 7) 감독관 수험 교실별 2인

다. 구성

-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 2) 부 위원장은 보건 2 과장으로 한다.
- 3) 간사는 식품 위생계장으로 한다.
- 4) 학과시험 위원은 (과목별) 보건관계 연직자 중에서 권위 있는 자로 한다.
- 5) 실기시험 위원은 아예할 중에서 선정안자로 한다.

가) 구영양사 양성학교 영양과 교수

나) 과로백 학원장

다) 조미사 양성학교장

라) 조미사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6) 서기는 보건 2 과 식품위생계 직원으로 한다.

마. 직무

-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기간중 시험 위원과 관계직을 지휘 감독한다.

2)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학과별 심기시험의 문제 및 답안의 선정과 지우기의 책임을 진다.

3) 간사는 시험 실시에 따른 제반 준비 및 시험장을 감독하며 시험 감독관 및 수험생의 부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반 감투를 한다.

4) 학과시험위원회는 담당 과목의 출제 및 채점의 책임을 진다.

5) 심기시험위원회는 담당 본 야의 출제 및 채점의 책임을 진다.

6) 서기는 시험 전반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7) 시험 감독관은 시험장의 집서유지와 시험 답안지 의 배부 및 수집과 부정행위자의 적발 및 퇴장의 책임을 진다.

#### 마. 시험 위원 위촉

1) 학과시험위원회와 심기시험위원회는 범지 서식에 의거 위촉하며,

2) 기타 관계장은 위촉장을 심판한다.

#### 바. 시험 출제방법.

1) 위촉받은 학과 시험 위원은 담당 과목에 대한 시험문제 50문제를 출제하되 문제당 2분 이내에 해답할수 있는 선형으로 출제 하며 범위는 구민학교 졸업자 정도에 알맞는 문제로 한다.

2) 위촉받은 심기시험 위원은 담당 분야에 대한 시험문제 5문제를 출제하되 문제당 20-30 분 소요 되며 시장 가격으로 200원 정도로 구입할수 있는 범위로서 실무에 3년정도 종사한자가 할수 있는 범위로 한다.

#### 사. 채점 방법

1) 필기 시험은 20문제에 배점을 각 5점으로 하며, 100 만점으로 하고 맞은 답만 계산하며 틀린답의 감점은 없어한다.

2) 심기 시험은 위생기술 및 배선으로 구분하여 채점하며 각 과목을 100점으로 총 배점은 3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위원회는 2인으로 6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아. 시험합격기준

1) 각과 시험

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5과목 총 500점 만점으로  
하고 과목당 60점 이상 총 득점 30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으로 하고  
30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나) 총 득점이 300점 이상이라도 과목별 득점이 40점 미  
만이 1과목이라도 있을 경우는 과락으로서 불합격으로 한다.

2) 실기시험

가) 실기 시험 위원 2인의 제정 총점 600점 만점으로  
과목당 60점 이상 총득점 360점 이상을 득하면 합격으로 하고 3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

44 196

2. 서울특별시 시행 71년도 제 1회 조역사자격시험실시계획서

조역사에 관한 규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시행 71년도 제 1회 조역사 자격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로 정함.

1. 시험 실시 일자 및 합격자 발표

가. 학과 시험 71. 3. 28

나. 심격시험 71. 4. 18, 19, 20 (4일간)

다.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 71. 4. 10 시정우정계서판

라. 심격시험 합격자 발표 71. 4. 30

2. 시험장소

가. 학과 시험 시내 용무로 3가 50 서울보건학교

나. 심격시험 상 동

3. 시험과목

가. 학과 시험

나. 1) 위생법규

2) 공중 위생학

3) 영양학

4) 식품학

5) 식품 위생학

나. 심격시험

1) 한식부

2) 양식부

3) 중국식부

4) 일본식부

중기 4분 야중 선택한 1분 야

4. 응시 자격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과목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야만

1) 계속사, 학교, 병원과 기타 무상 기관등의 급식 시설 또는 공공 기관에서 음식물의 조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장이 증명하는 자

2) 음식점 영업중 1월을 통한 1일 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여관, 호텔, 오미점, 짜바찌, 또는 밖에서 음식물의 조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장이 증명하는 자

5. 응시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1971년 9월 5 ~ 9 20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 2과

다. 제출 서류

- 1) 응시원서 (조정서식) 1부
- 2) 조리업무 종사증명 (응시원서 이면)
- 3) 사진 (용, 4센티, 랩모 상반신) 4매
- 4) 수수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0원

라. 응시원서 배부 및 토전대조

- 1) 조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첨 서식과 같이 인쇄배부한다
- 2) 토전본 또는 주민등록표 건강진단서는 면원서류 간소화

방안 에 외거 출번제출 서류에서 생략하고 동 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조리사 면허 신청서 확인 처리토록한다

마. 지참도구

- 1) 학과시험 볼펜 또는 단년필 (정식, 홍색)
- 2) 심거시험 식도, 위생복 위생모 영주 손수건

바. 수업료 교부 및 대조

- 1) 수업료는 원서접수시 교부하고, 시험당일 08:00부터



시험장에서 원서에 첨부된 사진 및 수험표와 본인을 대조하여 시험장에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하되 수험표는 좌측 등부에 부착하고 수험표를 받는다.

사. 학과 시험

1) 학과시험은 시험과목 5과목을 1교시에 3과목을 2교시에 2과목을 하십시오하며 문제당 배정시간은 2분으로 하고 09:00 (제1교시) 와 11:30 (제2교시) 에 출은 수험생은 수험을 붙여한다.

아. 심거시험.

1) 심거시험은 본 아법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문제당 배정 시간 30분 내외로 하고 09:00부터 실시한다

바. 합격자 발표

1) 합격자발표는 시정후정에 게시 발표한다  
2)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심거시험을 수험할수 있으며, 심거시험합격자는 최종합격자로 한다.

자. 합격자 등록

1) 최종 합격자는 71. 5. 3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조미사자격시험 합격증을 교부 하며, 면허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학. 면허신청

1) 조미사 자격시험 합격증을 교부 받은 자는 1971년 5. / 부터 5. 30 까지 사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조미사 면허를 신청하고 면허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매

나. 주면등록 또는 모적등록 1매

다. 건강진단서

딱) 사원 2명

딱) 수수료 1,000원 (시수 입증지)

3) 만약의 기간내에 면허신청이 없을 때에는 면허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공고방법

가. 일반신문 1개사에 1회공고만이다.

나. 공고안 붙임

7. 세입예정액

가. 공고후 응시자 총수에 의거 산출한다.

(응시자총수 × 응시수수료) (합격자면허수수료)

- 세입액

8. 소요예산

가. 응시자 총수에 의거 소요 예산을 산출 요구한다

나. 자격시험 신문공고료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신문 공고료

종	범	소요금액	산출근거	지출비목	지출방법	단	가
1	신문	₩22,000	1년 × 60일 × 180원	신문	취급에 의함		

다. 본 시험중 실기시험용 재료구입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  
범위내에서 전도 자금으로 집행한다

예산비목 : 보건비 위생관리비 식품위생비 수수료별  
추산액

188

서울특별시 교육청 제 35 호

조미사 자격시험 실시

조미사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을 예외하여 71년도 제 1회 조미사 자격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합니다.

71. 2. 25.

서울특별시장

1. 시험 실시명 장소

원	무심자
가	장
2	장
제	자
35	가
호	

가. 제 1차 시험 (학과시험)

1) 일시 : 71. 3. 28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중무로 3가 50 서울보건학교

3)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 71. 4. 10. 시청우정계시관

나. 제 2차 실기 시험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함)

1) 일시 71. 4. 17. ~ 20 (4일간)

2) 장소 : 서울시 중구 중무로 3가 50 서울보건학교

3)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 71. 4. 30. 시청우정계시관

4) 합격자 등록 및 면허신청 절차 #. #.

2. 시험 : 과목

가. 학과시험 : 위생법규, 공중 위생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 위생학.

나. 실기 시험 : 한식, 양식, 중국식, 일본식, 중 선택한 1 과목

3. 응시 자격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 기술사 학교 병원 후 생 기관 등의 급식 시설 또는 공공 기관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장 또는 의장이 증명 하는 자

2) 음식점, 영업종 1원을 통한 1일 평균 100원분 이상의 종업원

서울특별시 35-11

(서울특별시청 35호 제정부처장관명)

15/159

제공하는 식당 모델 어권 모델인 가바역 또는 마에서 용신들의 모델 일부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사실의 장이 증명하는 자.

#### 4. 용시 절차

가. 용시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장소

1) 접수기간 : 7. 3. 5. ~ 7. 20.

2)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 2과

나. 제출 서류

1) 용시원서(초점서식) 1부

2) 종업부 종사 증명(용시원서 이면)

3) 사진(3,4센미, 맘모 상반신) 4매

4) 수수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0원

다. 지참 도구

1) 학과 시험 : 분필 또는 만년필 (정색 또는 용, 식)

2) 실식기시험 : 식도, 위생복, 위생모, 양주, 손수건

#### 5. 기타 사항

가. 용시자는 시험 당일 08:00 까지 시험장에 집합하여 시험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당시 보건 2과(72)-944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록 장

서 명

귀하를 당시 시행 1971년도 제 1회 조목사 자격 시험의  
시험 위원으로 위촉함

1. 담당 과목

1971. . . . .

서울특별시장

166160